

#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005,313,707	60,159,411
일반회계	1,747,003,719	52,410,112
특별회계	258,309,988	7,749,300
공기업특별회계	107,140,863	3,214,2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724,210	1,611,72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3,416,653	1,602,500
기타특별회계	151,169,125	4,535,074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7,679,751	230,39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52,091	169,563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2,532,949	2,175,988
주택사업특별회계	41,703	1,25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37,361	19,121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54,364,114	1,630,923
주차장특별회계	10,214,615	306,438
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계	668	20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45,873	1,37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이월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26,14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88,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2025년도 제3회 추경 이후 연말까지 교부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